

한 미래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보통신 선진국 중의 한 국가인 싱가포르도 향후 10년 뒤 미래를 대비한 정보통신전략을 수립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행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민, 기업, 정부의 만족도를 더욱 높이고, 경쟁력 있는 정보통신 선진국가로서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내다보는 계획과 빠르게 변화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자료:

- [1] www.in2015.sg
- [2] www.ida.gov.sg
- [3] 디지털 데일리 2006. 6. 14

멕시코 주요 FTA 양허 현황

IT통상전략센터 연구원 이은경
(T. 570 - 4436, leeek@kisdi.re.kr)

1. 개요

가. 한-멕시코 SECA¹⁾ 협상 추진 현황

지난 2006. 6. 14~16 서울에서 개최된 한·멕시코 SECA 협상은 2000년 5월 제5차 한·멕시코 경제공동위에서 민간협력 강화, 투자 보장협정 체결, FTA 연구라는 3단계 FTA 추진방안에 합의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2004년 4월 양자 통상장관회담에서 경제관계 강화를 위한 공동 전문가그룹(Korea-Mexico Joint Experts Group on the Strengthening of Bilateral Economic Relations)이 구성되면서 보다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사전 논의를 바탕으로 2006년 총 3차례의 협상이 개최되었다.²⁾ 3차에 걸친 협상을 통해 양국은 상

1) SECA(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상품과 서비스 시장을 일괄적으로 모두 개방하는 FTA 보다 교역 자유화 수준이 낮으며, 양국이 합의한 분야만을 대상으로 자유화 하면서 IT·HRD 협력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새로운 개념의 경제협정. SECA는 양국간 공동연구과정에서 FTA 추진을 희망하는 우리와 산업계의 반대에 봉착한 멕시코측간의 이견을 절충하는 대안으로 멕시코측에 의해 제시된 것임

품무역, 통관절차 및 원산지, 서비스, 투자, 경제협력,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등 세부분야별 협의를 통해 양국이 사전 교환한 협정문 초안을 기초로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나. 멕시코의 FTA 추진 동향

멕시코는 80년대 이전 수입 대체 정책 등 폐쇄적인 무역 정책을 고수하였으나, 80년대 중반 이후 GATT 가입(1986)을 시작으로 90년대부터 주요 경제파트너와 FTA 체결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1992년 칠레와 최초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 후(1998년 재협상) 멕시코는 현재까지 미주대륙국가, 유럽연합(EU), 이스라엘 등 총 32개국과 12개 FTA를 체결하였으며,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국가로 자유무역협정 대상국을 확대하고 있다.

<표 1> 멕시코의 주요 지역무역협정 추진 동향

지역협정형태	협정일	발효일	참가국	주요내용
G3 자유무역권	1990. 9.	1995. 1. 1.	멕시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 2002년까지 자유무역지대 완성목표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1992. 10.	1994. 1. 1.	미국, 캐나다, 멕시코	- 자유무역협정, 자본이동 자유화, 노동 및 환경에 대한 보완협정, 분쟁처리기구 설치 - 서반구 전체의 자유무역지대화 추진
멕시코-니카라과 FTA	1992. 8.	1998. 7. 1.	멕시코, 니카라과	-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시장접근, 투자, 원산지 규정 등)
멕시코-코스타리카 FTA	1994. 4. 5.	1995. 1. 1.	멕시코, 코스타리카	-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상품 자유이동, 투자 무차별 대우 등)
멕시코-볼리비아 FTA	1994. 9. 10.	1995. 1. 1.	멕시코, 볼리비아	-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상품 자유이동, 투자 무차별 대우 등)
EU-멕시코 FTA	1995. 2.	2000. 7. 1.	EU, 멕시코	- 2000년 7월 발표, 2007년까지 총무역의 96%까지 자유화 추진 계획
멕시코-칠레 FTA	1998. 10. 1.	1999. 8. 1.	멕시코, 칠레	- 1992년 경제보완협정을 자유무역협정으로 확대
멕시코-이스라엘 FTA	2000. 4. 10.	2000. 7. 1.	멕시코, 이스라엘	- 2005년까지 공산품 관세철폐

2) 한-멕시코 SECA 제1차 협상(2006. 2. 7~9, 서울), 제2차 협상(2006. 4. 18~20, 멕시코 시티), 제3차 협상(2006. 6. 14~16, 서울)

지역협정형태	협정일	발효일	참가국	주요내용
멕시코-중미 3개국 FTA	2000. 7. 29.	2001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멕시코	- 2012년까지 공산품, 2013년까지 공산품에 대한 관세철폐 (엘살바도르(2001. 3. 15), 온두라스(2001. 6. 1), 과테말라(2001. 3. 15), 멕시코(2001. 3. 14))
멕시코-EFTA FTA	2000. 11. 27	2001. 7. 1	멕시코,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멕시코-우루과이 FTA	2003. 11. 15		멕시코, 우루과이	- 2003년 11월 서명, 국회비준 절차 남아 있음
멕시코-일본 FTA	2004. 9. 17	2005. 4. 1	멕시코, 일본	

자료: KOTRA 중남미지역본부

2. 멕시코의 IT 서비스 분야 양허 동향

가. 멕시코·주요국 FTA 통신서비스 양허 현황

주요국간 FTA에서 통신서비스를 양허하는 방식으로 흔히 사용되는 것이 별도의 통신서비스 관련 장을 협정문에 포함하는 것이다. 통신서비스 관련 장은 해당국간 통신서비스 시장의 경쟁 도입 및 규제에 대한 일반 원칙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내용 및 구조는 대체로 WTO 참조문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FTA 협상 당사국 중 특정 분야의 통신서비스를 FTA 협상의 적용 범위에서 배제시키고자 할 경우, 당사국간 합의에 따라 유보안을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멕시코가 체결한 대부분의 주요 FTA를 살펴보면, 상품분야 관세 철폐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통신서비스의 경우 양허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EU, 멕시코·이스라엘 FTA의 경우는 상품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³⁾ 멕시코·칠레 FTA를 제외한 대다수의 FTA가 별도의 통신 관련 장(Chapter)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멕시코·칠레 FTA는 공중통신전송망 및 서비스 접속 및 이용 보장, 부가서비스 제공 조건(비차별, 투명성 원칙), 표준관련 조치(필요한 범위 내 제한) 및 투명한 동등성 평가 절차, 독점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 금지, 투명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통신 관련 장을 포함하고 있으나, 별도의 부속서를 통해 특정 분야의 서비스에 대해 유보를 하고 있다.

3) 서비스 분야는 정부조달과 관련해서만 일부만 양허되었음

멕시코가 가장 최근에 체결한 한 FTA는 멕시코·일본 EPA⁴⁾로 본 협정은 2005년 4월 발효되었다. 멕시코·일본 EPA는 우리나라, 미국 등 주요국이 따르고 있는 FTA협정문과 그 구조가 매우 유사하고, 또한 멕시코가 가장 최근 아시아권 국가와 타결한 협정이므로, 멕시코·일본 EPA의 통신서비스 유보사항은 한·멕시코 SECA 통신서비스 대응 방안 마련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멕시코·일본 FTA 유보 대상 서비스

1) 멕시코

i) 현재유보⁵⁾

○ 국경간 공급⁶⁾ 및 투자

- 기타 통신서비스

- Commercial Agency⁷⁾로서 멕시코 내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관 설립시 SCT (교통통신부: 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Transport)의 허가 필요. 동 허가는 멕시코 국민 및 멕시코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에게만 발급
- Commercial Agency의 설립은 관련법에 준하며, 동 법령이 공포되기 전까지 허가를 부여하지 않음
- 별도의 승인(approval)이 없는 경우 SCT 공공통신망 허가권자는 Commercial Agency에 투자 불가
- 국제트래픽은 SCT에 의해 승인된(Authorized) 자의 국제포트를 통해서만 라우팅 가능

○ 투자

- 기타 통신서비스: 아래 허가권자(Concessionaire)에 대한 직, 간접 투자 49% 제한

- ① 국내 주과수대역을 이용, 이를 통한 이윤 창출, 활용(exploit)하는 자
- ② 통신망의 설치, 운영, 활용하는 자

4) 일본 및 멕시코간 경제협력강화협정(Agreement between Japan and the United Mexican States for the Strengthening of the Economic Partnership: EPA)
5) 분야별 유보는 통상 현재 존재하는 규제 및 조치들에 적용되는 현재유보와 미래에 예상되는 규제 및 조치 등에 적용되는 미래유보로 구분됨
6) 인력이나 자본 등 생산요소의 이동이 수반되지 않고 서비스 자체가 국경을 넘어 제공되는 경우
7) 멕시코는 자국의 WTO 양허안에서 Commercial Agency를 '전송수단을 보유하지 않고 공공네트워크 허가권자의 장비를 활용하여 제3자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재판매 사업자와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③ 국가에 할당된 정지궤도 혹은 위성궤도를 사용하거나 그 주파수 대역을 활용하는 자
- ④ 국내지역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해외 위성시스템 주파수 대역의 신호전송 및 수신권을 활용하는 자
- 전화서비스 공중전화 서비스, 통신 설치(Telecommunication Installation)
 - 전화 서비스, 공중전화서비스, 전화 설비 서비스(셀룰러 전화 제외)를 제공하는 멕시코 허가권자에 대한 직·간접 투자 49% 제한
 - 셀룰러 전화의 경우 49% 이상 투자 희망 시, 국립해외투자 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Foreign Investment)의 결정(Resolution)이 있어야 함
- 교통 및 통신: 외국 정부 및 국영 기업은 통신, 교통 및 기타의 수단을 통한 통신 활동에 투자 불가
- 국경간 공급
 - 기타 통신서비스: 아래와 관련하여 SCT의 허가(Concession) 필요
 - ① 국내 주파수대역의 이용, 이를 통한 이윤창출 및 활용
 - ② 공공통신망의 설치, 운영 및 활용
 - 전화서비스 공중전화 서비스, 통신 설치(Telecommunication Installation)
 - 아래와 관련하여 SCT의 허가 필요
 - ① 국내 주파수대역의 이용, 이를 통한 이윤창출 및 활용
 - ② 통신망의 설치, 운영, 활용
 - ③ 국가에 할당된 정지 궤도 혹은 위성궤도를 사용하거나 그 주파수 대역을 활용
 - ④ 국내지역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해외 위성 시스템 주파수 대역의 신호 전송 및 수신권을 활용
 - 멕시코인 및 멕시코 기업에게만 허가 부여
 - 위 서비스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전용망사업자는 SCT의 허가를 획득해야 함
 - 공공통신망은 전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비를 포함하며, 망 종단점을 지난 지점에 위치한 통신망 또는 이용자의 통신 장비를 포함하지 않음
 - 멕시코 내에서 전자기파의(radioelectrical spectrum) 사용을 위한 주파수 대역의 이용, 그로부터의 이윤 창출 및 활용을 위해 허가(concession)가 필요하며, 허가는 공개 입찰을 통해 제공됨

ii) 미래 유보

- 투자 및 국경간 공급
 - 기타 통신서비스(이동 및 유선 항공통신서비스)
 - 항공운항통제, 항공기상학, 항공통신 및 기타 운항서비스와 관련된 통신분야 서비스 제공 및 투자 관련 조치
 - 기타 통신서비스(해양통신서비스)
 - 해양통신서비스 제공 및 투자 관련 조치
- 우편(메신저 서비스 포함), 전신(무선전신서비스 포함)
 - 멕시코 정부만이 우편, 전신 및 무선전신 서비스 제공 가능

2) 일본

i) 현재유보

- 투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투표권 총계가 1/3을 초과하는 주주는 Nippon Telegraph and Telephone Corporation의 주주 명단에 등재 불가
 - 일본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연인
 - 외국 정부 및 대표
 - 외국 법인 및 기관
 - 일본 국적이 없는 자는 Nippon Telegraph and Telephone Corporation, Nippon Telegraph and Telephone East Corporation, Nippon Telegraph and Telephone West Corporation의 이사 및 검사직에 취임 불가
 - 지역전화(wired broadcast telephones 제외), 장거리 전화, 기타 유선 전화, 이동 전화, 인터넷 기반 서비스: 동 분야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외환 및 해외무역법에 따라 사전 통지가 필요

ii) 미래 유보

- 해당사항 없음

참고자료:

- [1] 김진오, 한국-멕시코 FTA 전망과 주요 쟁점, KIEP, 세계경제 2003. 10
- [2] 중남미 국별 FTA 추진현황 및 우리나라와의 추진 가능성, KOTRA 중남미지역본부, 2003. 12
- [3] Mexico Revised Conditional Services Offer, TN/S/O/MEX/Rev.1, WTO, 2005. 8

- [4]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Israel and Mexico, WT/REG124/1, WTO, 2001 .8
- [5]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Chile and Mexico, WT/REG125/1, WTO, 2001. 8
- [6]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between Japan and Mexico, WT/REG198/N/1 S/C/N/328, WTO, 2005. 4
- [7]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ies and Mexico, WT/REG109/2, WTO, 2000. 11
- [8]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y and Mexico, WT/REG109/5, WTO, 2005. 6
- [9]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EFTA States and Mexico, WT/REG126/N/1 S/C/N/166, WTO, 2001. 8
- [10] Agreement between Japan and the United Mexican States for the Strengthening of the Economic Partnership, Jap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04. 9

Ofcom, 통신시장의 ‘소비자정책’에 관한 방향성 논의

공정경쟁정책연구실 연구원 김민정
(T. 570 - 4093, mintkim@kisdi.re.kr)

1. 개 요

영국 통신규제기관 Ofcom은 TSR(Strategic Review of Telecommunications)에서 제기되었던 이용자보호관련 이슈를 검토하고 향후 체계적인 소비자정책을 수립하고자 올해 2월 이에 관한 청문서를 발간하였다. Ofcom은 기본적으로 활발하고 효과적인 경쟁이 이용자후생을 극대화한다는 입장으로, 이와 함께 통신시장의 불만과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에 소비자정책의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소비자보호, 피해예방과 같은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소비자에게 풍부하고 정확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비주권’을 부여하여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본 고에서는 이에 대한 Ofcom의 세 가지 접근방식 1) 경쟁정책과의 통합, 2) 소비자 보호, 3) 소비자권한 강화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